

#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검토보고서

2024. 7. .

도시교통위원회전 문 위원

##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1. 제안경과

○ 본 청취안은 2024년 7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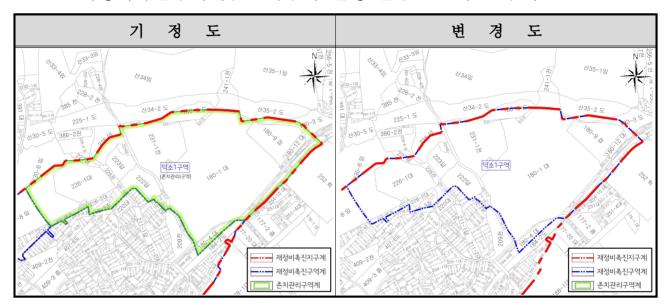
○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덕소1구역에 대하여 촉진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O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 위 치 :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도곡리 일원
  - 지구면적 : 631,082.1 m²
  - 세 대 수 : 8,935세대(23,231인)
  - 추진현황(덕소1구역 관련)
    - 2007. 11. 26. :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2010. 8. 2. :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최초)
    - 2013. 8. 2. : 실시계획인가 미신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실효
    - 2013. 8. 29.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남고제2013-221호]
    - 2014. 5. 15. :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남고제2014-163호]
    - 2016. 4. 21. :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남고제2016-101호]

## O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요내용

- 지구면적 : 631.082.1 m² (변경없음)
- 세 대 수 : 기정) 8,935세대 ⇒ 변경) 9,945세대 (증 1,010세대)
- 인 구 수 : 기정) 23,231인 ⇒ 변경) 25,756인 (중 2,525인)
- 촉진구역 : 기정) 9개소 ⇒ 변경) 10개소 (중 1개소)
  - \* 사유: 존치관리구역(존치관리I구역) → 촉진구역(덕소1구역) 지정
  - ※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결정(변경)도 (덕소1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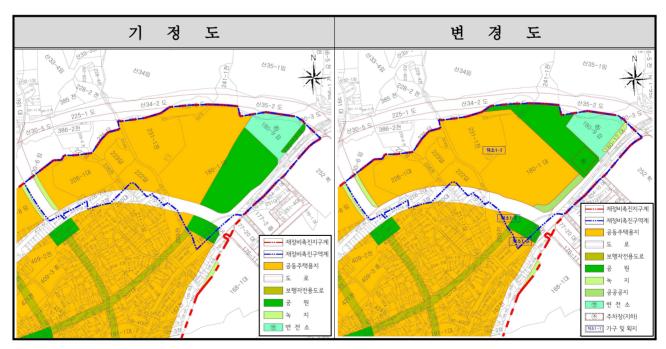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 주거용지 : 기정) 318,967.1 m² ⇒ 변경) 317,475.1 m² (감 1,492.0 m²)
  - 기반시설용지 : 기정) 226,805.0m² ⇒ 변경) 233,977.0m² (증 7,172.0m²)
  - 기타용지 : 기정) 17,021.0m² ⇒ 변경) 11,341.0m² (감 5,680.0m²)
- 용도지역
  - 주거지역 : 기정) 479,060.6m² ⇒ 변경) 478,197.6m² (감 863m²)
  - 녹지지역 : 기정) 86,576.5m² ⇒ 변경) 87,439.5m² (증 863m²)
- 기반시설 순부담 면적 및 순부담률
  - : 기정) 60,427.4m², 14.9% ⇒ 변경) 83,299.4m², 17.4% (중 22,872.0m², 2.5%)
  - \* 사유 : 촉진구역(덕소1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변경
- 단계별 추진계획 변경(3단계)
  - : 기정) 덕소3·4구역 ⇒ 변경) 덕소1·3·4구역 (증 덕소1구역)

## ○ 신설 촉진구역(덕소1구역)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명 칭		면 적(m²)			구성비	ul –
	기 정	변경	기 정	변 경	증·감	(%)	비고
합 계			80,454	80,454	_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26,855	34,027	증) 7,172	42.3	
	도 로	도 로	12,326	14,137	증) 1,811	17.6	
	공 원	공 원	13,898	11,628	감) 2,270	14.5	주차장 중복결정 1개소
	녹 지	녹 지	631	1,203	증) 572	1.5	
	_	공공공지	_	1,389	증) 1,389	1.7	
	I	전기공급 설비	-	5,670	증) 5,670	7.0	변전소
획지	소 계		53,599	46,427	감) 7,172	57.7	
	주거용지	덕소1-1	47,919	45,477	감) 1,492	56.6	
		덕소1-2		439		0.5	
		덕소1-3		511		0.6	
	기타용지	_	5,680	_	감) 5,680	_	변전소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이하 생략)

#### 4. 검토의견

- 덕소 1구역은 2010년 8월에 덕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3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2013년 8월에 지구 지정이 해제되어 2014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구역과의 접한 구역으로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존치관리1 구역으로 관리되다가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변경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구의 총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존치관리1구역 면적 80,454㎡가 덕소1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 이용계획은 변전소 면적이 기반시설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기타 및 주거용지가 7,172㎡감소하였고, 용도지역은 863㎡가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상향됨에 따라 세대수가 1,010세대 증가하고 덕소 2,3구역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중복결정) 증설등 기반시설 확충이 동반되기에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 요인으로 여겨지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향후 공청회가 있는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붙임1

### 관계법령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정비법)

[시행 2024. 4. 27.] [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1

####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 3. 인구·주택 수용계획
-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5. 공원 · 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 6. 교통계획
- 7. 경관계획
-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 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 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 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 2. 1.>
-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 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⑦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23. 12. 26.]

#### (관계 조례)

# 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 제정) 2013.09.12 조례 제1137호 (일부개정) 2019.10.31 조례 제1694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 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 제3조(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3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 10. 31.>
- 제4조(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 방법 등)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 1. 조사방법 : 우편조사 원칙
  - 2. 참여비율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 3. 동의비율 : 조사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 4. 동의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
-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0. 31.>
  - 1.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 3. 재정비촉진구역별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 인 사람
  -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 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예산

- 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 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1 항 각 호의 범위 이내
  -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으로 한다.
  -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체육시설
  - 2. 청소년수련시설
  - 3. 종합의료시설
- 제8조(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남양주 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사업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사업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시장이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 10. 31.>
  - ④ 사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 ⑤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③ 사업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31.>

-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 제11조(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대도 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대 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제12조(교지의 임대료와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한다.
  - ② 제1항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7조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 ④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등) ① 영 제29조에 따라 시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분납하고 남은 설치비용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14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 영 제33조제2호의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 택유형을 말한다.
- 제15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 상을 말한다
  -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크면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국·공유지 면적보다 작으면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 건립비율 = 25 × [(국·공유지 면적 기반시설 부지면적) / 국·공유지면적]
  -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9. 10. 31.>
  -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지구에

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다음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0 31 >

- 1. 임대주택 3,000세대 미만 : 증가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
-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 : 증가용적률의 20퍼센트 이상
- 3.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 : 증가용적률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⑥ 영 제34조제2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9. 10. 31.>
- 제16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이미 설치·운영 중인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로 갈음한다.
- 제17조(주민의견조사)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할 수 있다.
- 제18조(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등)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법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는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694호,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